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가단2387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유장미

피 고 A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에 2020. 8.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8. 19. 접수 제1855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의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B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① 2018. 6. 25. 보증금액 10,450,000원, 보증기한 2023. 6. 26.

② 2020. 4. 17.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21. 4. 16.

B은 원고가 발급해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 및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나. B은 2020. 8. 14. 폐업을 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해당하게 되었다. B이 위 각 은행들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B을 대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 각 은행들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① 2020. 12. 28. C은행 : 원리금 6,204,366원

② 2021. 3. 8. 기업은행 : 원리금 20,114,082원

다. 이후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으로서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차전1966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1. 4. 5. 아래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1. 5. 11. 확정되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1. 금 26,448,954원

2. 위 1항의 금액 중 6,106,356원에 대하여 2020. 12. 28.부터 2021. 4. 25.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3. 위 1항의 금액 중 20,114,082원에 대하여 2021. 3. 8.부터 2021. 4. 25.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 독촉절차 비용 72,300원

(내역 : 송달료 61,200원, 인지액 11,100원)』

라. B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 발생 이후(폐업신고 2020. 8. 14.)인 2020. 8.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자신의 딸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8. 19. 접수 제1855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서울 양천구 D소재 상가 제지하층 E호(전용면적 16.24㎡)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소외 F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이 법원의 안양시 만안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공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각 은행들에 대하여 신용보증의 대상인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보증사고로 판단될 수 있는 폐업신고는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 B이 이미 위 각 은행들에 대하여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출금채무를 지고 있고 폐업신고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할 별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와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B이 대출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아 보증인인 원고가 2020. 12.

28.과 2021. 3. 8.에 각 은행들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이에 비추어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의 존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B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B은 피고의 모인데 자영업을 영위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출을 받아서 B을 지원해 주었다. 이에 B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점포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그 약속에 기하여 B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은 B과의 일종의 채무와 관련하여 일종의 대물변제약정이 있었고, 그 대물변제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물변제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B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피고 역시 B에 대한 관계에서는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가 초과된

채무자가 특정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는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서 더 살피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홍준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3층 생활시설 및 구매시설 동

지하1층 386.70㎡

1층 221.10㎡

2층 214.70㎡

3층 166.7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 11,468.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1.60㎡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1,468.90분의 5.15

- 이상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판합 -

